

2021년도 국회입법조사처 공무원 채용 공고

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분석하여 국회의원에게 제공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국회소속의 입법정책지원기관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와 미래를 함께하며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응모바랍니다.

2021년 9월 28일

국회입법조사처장



□ 채용(예정) 분야 및 인원

근무부서	담당 분야	직 위 (직 급)	인 원	우 대 요 건
정치행정 조사실	통일·남북관계	입법조사관 (일반임기제 4급)	1인	-관련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 -관련 분야 근무경력자
정치행정 조사실	정당·의회·선거	입법조사관 (일반임기제 5급)	1인	-관련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
사회문화 조사실	사회복지(기초보장, 취약계층지원, 사회서비스)	입법조사관 (한시임기제 5호)	1인	-관련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
사회문화 조사실	디지털 포용정책 (정보격차 해소 등)	입법조사관보 (전문임기제 라급)	1인	-관련 분야 근무경력자

※한시임기제는 주당 근무시간 35시간

□ 직무 분야

▷ 입법조사관

-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분석 및 회답
- 입법 정책 관련 국내외 입법 동향 및 사례 등에 관한 조사·분석 등

▷ 입법조사관보

-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분석 및 회답 지원
- 입법 정책 관련 국내외 입법 동향 및 사례 등에 관한 조사·분석 등 지원

□ 응시자격 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 응시 자격 요건 중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응시할 수 있음(면접시험일 기준)

▶ 입법조사관(일반임기제 4급)

구 분	자격요건
학위기준	• 관련 직무분야 박사학위 소지 후 4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 관련 직무분야 석사학위 소지 후 8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자격증기준	• 변호사 자격 소지자 중 자격증 취득 후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근무경력 기준	• 임용예정직급과 동일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3년 이상 근무경력 및 연구경력이 있는 자 • 관련 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이 12년 또는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 경력 3년 이상인 자

▶ 입법조사관(일반임기제 5급)

구 분	자격요건
학위기준	• 관련 직무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관련 직무분야 석사학위 소지 후 4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자격증기준	• 변호사 자격 소지자 중 자격증 취득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근무경력 기준	• 임용예정직급과 동일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3년 이상 근무경력 및 연구경력이 있는 자 • 관련 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이 9년 또는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 경력 3년 이상인 자

▶ **입법조사관(한시임기제 5호)**

구 분	자격요건
학위기준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자격증기준	• 변호사 자격 소지자 중 자격증 취득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근무경력 기준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입법조사관보(전문임기제 라급)**

구 분	자격요건
학위기준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근무경력 기준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 “근무경력 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함
- ※ 각 직위별 응시요건 중 민간 관리자 경력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본부장, 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 등을 기준으로 함

□ 채용계약기간 및 보수수준

▷ 근무기간

○ 일반임기제 4·5급 : 최초 근무기간은 임용일로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이며, 관련 법규에 따라 총 근무기간 7년 내에서 연장 가능함. 단,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추가로 5년 내에서 연장 가능

○ 한시임기제 5호 : 근무기간은 임용일로부터 2022년 12월 29일까지임

○ 전문임기제 라급 : 최초 근무기간은 임용일로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이며, 관련 법규에 따라 총 근무기간 5년 내에서 연장 가능

※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 직위해제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직위해제에 따른 대기명령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에는 직권면직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보수

○ 보수는 연봉 한계액 내에서 경력 등을 고려하여 책정하고,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은 별도 지급

<연봉한계액 표>

(단위: 천원)

구 분	상한액	하한액
일반임기제 4급	-	62,416
일반임기제 5급	83,059	47,209
전문임기제 라급	54,984	39,222

○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은 영 별표30의 2에 따른 등급별 봉급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구 분	봉급월액	근무시간(35시간) 적용
한시임기제 5호	2,825,100원	2,471,960원

□ 제출 서류

① 응시원서(별지1) 1부

- 정부 수입인지(10,000원) 1매 부착, 인쇄본 제출 가능
 - ※ 정부 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 등에서 구입
- 사진[여권용 사진(3.5cm×4.5cm)] 1매 부착
- 응시원서는 반드시 워드프로세서 작업으로 작성

② 이력서(별지 2) 1부 - 응시원서 부착 사진과 동일 원판

③ 자기소개서(별지 3) 1부

④ 직무수행계획서(별지 4) 1부

⑤ 연구실적물 목록(별지 5) 1부 : 해당자에 한함.

- 연구·저술이 완료된 실적물로 최근 것부터 기술하되, 공동저술의 경우 '공동저술여부'란에 공동저술(집필인원수) 표기 Ex) 공동저술(3인)

⑥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확인 연락처(별지 6) 1부

⑦ 최종 학위증명서 1부

- 외국 학위의 경우 한국연구재단의 학위신고서 첨부
 - ※ 재학 중인 자(휴학·수료 포함)는 최종 학위증명서 외에 재적(수료)증명서 추가 제출
 - ※ 합격자가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에는 제출된 학위신고서와는 별도로 추후 해당 대학에 학위수여 사실여부를 조회하는 등 검증절차를 거침

⑧ 대학 이후(대학포함)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⑨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에는 직급(계급)별 세부 경력사항 및 기간이 명기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경력 및 기간만 인정
- 응시원서 기재한 경력기간과 증명서의 기간이 일치해야 함.

⑩ 최종 학위논문 1부(사본 가능)

- 박사학위논문 제출 시 5매 이내의 별도의 국문초록 첨부

⑪ 연구실적물 : 해당자에 한함.

- 자신의 연구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대표 연구실적물 원본 (또는 사본) 1부 제출
 - ※ 연구실적물 :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등재 후보지 포함)이상의 간행물에
최근 3년 이내 게재된 주요 실적물, 기타 주요 저서 또는 학위논문

⑫ 자격증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사본 가능)

- 증명서가 제출된 자격만 인정

※ 위 ⑦, ⑧, ⑨의 경우 원본 또는 원본필 날인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을 제출할 경우 학위 및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음.

다만 외국에서 받은 학위로서 해당학교에서 학위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학위기 원본만을 교부하는 사례 등)한 경우, 예외적으로 학위증명서류 사본(학위기 사본 등)의 제출이 가능함.

※ 외국어로 작성된 자료(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는 번역본 첨부하여야 함.

□ 선발 방법

○ 응시 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 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통하여 선발

○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여부 등을 검정

※ 직무수행능력 검정은 응시분야 관련 현안 또는 연구실적 등에 대한 응시자 발표 및 면접관과의 질의·답변 방식을 포함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9.28.(화)부터 10.12.(화)까지

○ 접수방법 : 우편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방문접수도 가능

- 우편접수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함. 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서류미비로 인하여 당하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

- 방문접수 : 우편접수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각 채용마감일 오전 까지 채용업무 담당자와 반드시 사전연락 후 방문접수

※ 우편접수 주소 및 방문접수 장소

: 07233)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로 1 국회입법조사처 총무담당관실(403호)

○ 현황게시 : 접수마감 후 입법조사처 홈페이지 채용정보(www.nars.go.kr)에 게시

□ 면접일시 · 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에 개별통지하며, 입법조사처 홈페이지 채용정보에 게시

□ 기 타

- 상기 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관련규정(「국가공무원법」, 「국회인사규칙」,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국회임기제공무원규정」 등 인사관계규정) 및 임용약정서에 의함.
- 채용심사과정에서 해당 직위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초 채용예정인원 등에 불구하고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또는 임용절차 진행 과정에서 임용할 수 없는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 및 실적물은 반환하지 않음.
- 채용시험 실시를 위하여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응시자격 판단 및 합격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해당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문의사항 : 국회입법조사처 총무담당관실☎ (02) 6788-4517]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다운받아 한글(HWP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함.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3. 응시원서 서명란에 날인 또는 서명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4.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함.
5. 응시원서 상 경력사항의 기간 등은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의 기간 등과 동일하게 작성함.

<작성요령>

- ① 주 소 :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
- ② 응시번호 : 응시자는 기재하지 않음.
- ③ 응시직위 : 응시하고자 하는 직위명에 표시를 함.(복수 불가능)
- ④ 응시자격 기준 : 본인이 응시하는 해당 기준에 표시를 함.(복수 가능)
- ⑤ 학력사항 : 박사란의 전공부분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기술하기 바람.
- ⑥ 경력사항 :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을 기준으로 하며,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가 제출된 사항에 대하여만 기재(경력증명서 미제출시 해당 경력 불인정)
 - * 기재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첨으로 작성 가능
 - * 응시직위의 직무내용 등을 참조하여 경력사항별로 관련분야 여부 란에 ✓표시
(다만 응시자의 관련분야 여부 표시는 참조사항으로 이용되며, 최종 관련분야 인정여부와는 다를 수 있음)
- ⑦ 자격증 : 외국어 능력이나 전문자격증, 컴퓨터 관련 자격 등 기재(해당자에 한하며, 응시일 현재 유효한 자격만을 기재)
 - * 등록부 기재일과 자격 취득일(합격일 등)이 다른 경우, 등록부 기재일과 자격 취득일 모두 기재 (증명서 미제출 시 해당 자격증 불인정)

[별지 1]

응 시 원 서

국회입법조사처장 귀하

본인은 2021년도 국회입법조사처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채용시험 실시를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기재하며, 기재된 개인정보가 필요 최소한의 범위(응시원서 및 모든 제출서류의 검증, 합격결정 등)내에서 활용되는 것에 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2. 아래 기재 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채용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당해 응시가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1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성 명	한글			생년월일		사 진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3.5cm×4.5cm) 탈모 상반신 사진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한자						
주 소	(우:)						
연락처	휴대폰			e-mail			
응시 번호			응시직위 <응시분야>	☐ 통일·남북관계(4급) ☐ 정당·의화·선거(5급) ☐ 사회복지(5호) ☐ 디지털 포용정책(라급)			
응시자격 기준		☐ 학위, ☐ 경력, ☐ 자격증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란】 ※10,000원 상당
학 력	학사	년 월	대학교	학과 졸업			
	석사	년 월	대학원	학 전공			
	박사	년 월	대학원				
		학위명()		전공()			
경 력 사 항 (현재 경력 포함)	근무처(부서)		직 급	근무기간(년월일)		관련분야여부	
	반드시 증빙을 제출한 경력만 기재할 것			증명서의 증명기간과 동일하게 기재할 것		☐	
	최근 경력부터 기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격증 어학	종류		검정시행기관	등록번호		취득일	

이 력 서

[별지 2]

성명	한글		생년월일	(만 세)	사 진 여권용(3.5cm×4.5cm)
	한자				
현 주 소					
현 소 속		(기관 및 부서) (직위)			
연 락 처	자택	사무실	휴대폰	E-mail	
병역	군필여부		기타 사항		
	최종계급				

☐ 직무관련 정보

구분	내용
직무에 대한 이해 및 응시 취지	※ 자신의 지식·경험·경력 등과 응시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응시직위에 대한 소견, 응시취지, 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등을 간단하게 기재

☐ 교육배경

구 분	내 용				
	학 교 명	입학년도	졸업년도	전 공	학 위
학력 및 전공					
상훈 등					

☐ 자격증 관련

구 분	내 용		
	종 류	검정시행기관	등록번호
자격증			
어 학	종 류	검정시행기관	점수 또는 수준
기타 보유 자격 또는 기술			

자 기 소 개 서

[별지 3]

주요경력	기 간	소 속	직 책

※ 채용예정 희망직위와 관련하여 자신의 경력·전문성·업적·장단점 등을 A4용지 2매 내외로 기술(업적은 사례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필요시 별지 사용 가능)

-

직무수행 계획서

○ 응 시 부 서 :

○ 응 시 직 위 :

○ 응시자 성명 :

○ 생 년 월 일 : 년 월 일(만 세)

○ 내 용

- 희망하는 직무분야와 관련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바를 3매 내외로 기술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서술하되, 응시부서의 주요업무에 관한 정책목표와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포함

연구논문 및 저술 등 실적물 목록

1.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등재 후보지 포함)이상의 간행물에 최근 3년 이내 게재된 주요 실적물

연번	구분	연도	제목	출처	주요내용	공동저술 여부	비고

2. 기타 주요 저서 또는 학위논문 목록

연번	구분	연도	제목	출처	주요내용	공동저술 여부	비고

※ 작성요령(1, 2번 공통)

- 연구·저술이 완료된 실적물로 최근 것부터 기술하되, “구분”란에는 단행본, 연구논문, 학위논문, 용역과제, 기고문, 기타 등으로 구분, “연도”, “제목”란에는 각각 해당 실적물의 발간연도와 제목을, “출처”란에는 발행처 또는 학술지명을 기재(발간 연월일 및 통권번호 등 기재-시작 및 끝 페이지 기재) Ex) ○권 ○호 ○○쪽 ~ ○○쪽
- “주요내용”란에는 실적물의 주제 등 내용을 간략히(30자 내외) 기재
- “공동저술여부”란에는 공동저술인 경우, “공동저술(집필인원수)”으로 기재 Ex) 공동(5인)
- “비고”란에는 출처가 학술지인 경우에는 “해외국제”(해외발간국제학술지), “국내국제”(국내발간국제학술지), “국내”(국내발간국내학술지),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또는 후보지 여부도 적시
- 연구실적물이 많은 경우는 별지를 추가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글자크기를 작게(10호 정도)하더라도 인쇄의 세로양식을 유지할 것

학력사항 확인 연락처

[illegible]

경력사항 확인 연락처

[illegible]